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2. 14(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1. 18. 성북구청장(의안번호 141호)

나. 회부일자 : 2015. 11. 19.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5. 11. 23. 상정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과 수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 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차별화된 성북 대표 지역문화 축제, 공연, 전시 진행
-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 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 문화시설 운영관리(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문화 행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규설)

-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서,

○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 발굴 사업’으로,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구민의 문화예술향유 현황과 수요조사 및 연구, 해외 지자체들과의 교류사업 추진,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성북진경 페스티벌 등 성북구의 차별화된 대표 지역문화 축제 등 개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조성,

- 지역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확대, 문화예술관광 코스개발을,
 - 그리고 아리랑시네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12개의 문화·교육 시설과 성북 정보도서관, 아리랑 정보도서관 등 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은 민법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2012년 9월1일에 설립된 사항으로서 법률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동의안의 제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
----------	-----------

발의
년월일 2015년 11월 18일
발의자 성북구청장

1. 수정이유

-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사업의 필요성중 도시재생을 문화재생으로 수정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을 한정

2. 주요내용

- 동의안 내용 3번째 필요성 내용중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을 “사회적경제 및 문화재생” 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3번째 필요성 내용중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을 “사회적경제 및 문화재생” 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p>3. 필 요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아동친화도시”와 “지속가능 하는 <u>사회적경제 및 도시 재생</u>”에 기여 	<p>3. 필 요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안과 같음) ○ (동의안과 같음) ○ ----- ----- <u>사회적경제 및 문화 재생</u>-----